언론중재위원회 2006년도 정기세미나 주제논문집

언론중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일시 : 2006. 11. 23(목)~25(토)

장소 : 전북 완주 대둔산관광호텔

언론중재위원회

목 차

제1주제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 9

제2주제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 37

- 이 책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은 당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제1주제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한 위 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한 위 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Ⅰ. 서 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새로운 언론중재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1]는 1980년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반론권 제도가 도입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진전으로 1987. 11. 28.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는 가운데서도 언론중재제도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계승되어 존속되었고, 언론중재제도의 지속적 성장 및 발전과 더불어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나아가 피해구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여망을 바탕으로 언론중재법이 2005. 1. 27. 제정, 공포되고, 2005. 7. 28.부터 시행되었다.[2]

이로써 언론중재제도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가 초래되었으나, 한편 2006. 6. 29. 언

---

1)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중재'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질은 '조정'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II. 5.항을 참조. 이하,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의 '중재'는 '조정'의 의미로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의 '중재'는 '고유의미의 중재'와 '조정'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2)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중재제도의 연혁과 언론중재법의 입법경위 등에 대하여는, 양삼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2005년 봄호, 4면 이하; 양경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인가", 언론중재 2005년 가을호 45면 이하 참조.

론중재법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3]이 내려져 부분적인 개정이 나마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언론중재법에 의한 새로운 언론중재제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와 개선점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새로운 언론중재제도의 내용

1. 개 설

언론중재법은 과거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 규정한 것으로[4] 1980년 이래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에 기초하여 언론중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된다.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종래 언론중재제도와 달라진 부분이 많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은, (1) 언론중재대상이 되는 언론을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에까지 확대한 것, (2)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와는 별개의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한 것, (3)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 포함시킨 것, (4) 고유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한 것, (5) 종래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적용되던 언론중재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기하고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 이를 차례로 본다.

---

3) 헌재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등 결정, 헌재공보 117호 950면,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44면.

4) 먼저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하에서, 방송에 대하여는 방송법 제91조에서, 뉴스통신에 대하여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 제764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민법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언론중재법으로 흡수되었다.

2. 중재대상 언론의 확대

종래 언론중재의 대상은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또는 '방송'에서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제기하는 반론보도청구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여기서 "정기간행물"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을 말하며('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하며('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의미했다(방송법 제2조 제3호).

그런데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의 대상으로서의 언론에 종래의 정기간행물, 뉴스통신과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있고(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인터넷 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신문, 즉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5]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8호).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터넷 신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로 인한 피해구제절차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

5)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의 창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과의 관계가 문제되었으나, 종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라고 명시하였음에 반하여 언론중재법에서는 위 문구를 삭제하였고, 특히 제2항에서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며, 언론중재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언론중재법의 위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 즉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청구권과는 별도의 독립된 권리를 창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6)]

이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즉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어서, 설사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에도 언론사가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 한 허위보도를 시정할 방법이 없었는데 언론중재법이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함으로써 비로소 피해회복이 가능하게 된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

6) 헌재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 헌재공보 117호 976면,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69면 참조.

한편, 위법성이나 고의 과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를 강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신문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위축되지 않고 신속히 보도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가 지닌 본래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진실 또한 이에 못지않은 강한 정의(正義)의 요구이므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타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는 한, 이를 정정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진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시하면서 그 합헌성을 인정하였다.[7)]

다만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는 피해자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에 당해 언론사에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3항).

4. 중재범위를 손해배상청구에까지 확대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은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도 언론중재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하였다.

이는 종래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만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언론중재법으로 손해배상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에 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

7) 위 헌재결정, 헌재공보 117호 976면,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70면 참조.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경험이나 인적 구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손해액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들을 설득시켜 합의를 도출함이 쉽지 아니할 것이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병합청구된 반론보도청구 등의 해결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5. 고유의미의 중재의 도입

종래 정기간행물법 및 방송법 등에 의한 언론중재는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중재"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중재법 제3조 제1호 참조),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인데(중재법 제35조), 종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또한 중재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도록 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중재결정을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구 정기간행물법 제18조 각항 참조).

그런데 언론중재법은 종래의 '중재'를 '조정'이란 용어로 바꾸고(언론중재법 제18조 이하 참조), 제24조 제1항에서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동조 제3항에서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고유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언론에 관한 분쟁을 조기에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 졌음은 물론 언론중재제도의 명칭이 실질과도 부합하게 되었다.

6. 필요적 전치주의의 폐지

종래 구 정기간행물법 제19조 제1항은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추후보도청구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함으로써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한 언론중재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8)]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은 제26조 제1항에서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하였다.

이는 반론보도청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당초부터 당사자 사이의 견해차이가 커서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조정단계에서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구제가 지연되는 단점을 해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9)]

7. 기 타

그밖에도 종래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의 청구기간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에서(구 정기간행물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로 연장하였고(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종래 신청인은 중재기일에서의 1회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고 피신청인은 2회 불출석의 경우에 합의간주 되는 것을(구 정기간행물법 제18조

8) 다만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었지만(구 정기간행물법 제18조 제1항 참조) 그러한 중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의 제소가 가능했다.

9) 양삼승, 앞의 글, 10-11면 참조.

제5항), 신청인의 경우에도 2회 불출석의 경우에만 취하간주 되도록 하였고(법 제19조 제3항), 또한 종래 서면으로만 중재신청이 가능하던 것에서(구 정기간행물법 제18조 제1항)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10]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8조 제3항).

이러한 사항은 모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충실과 편의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Ⅲ. 새로운 언론중재제도의 성과

1. 개 설

앞서본 바와 같이 피해구제의 폭을 확대하고 피해구제가 용이하도록 한 새로운 언론중재제도는 2005. 7. 28. 시행 후 1년을 지나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종전에 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새로이 창설된 정정보도청구가 주종을 이룰 정도가 되었고,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신청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신청 및 피해구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고유 의미의 중재신청도 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새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허용된 인터넷 신청과 구술신청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하에서 차례로 본다.

---

10) 언론중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정신청건수의 증가

먼저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기 전의 2004년 1년간 총 조정신청건수가 759건에 불과하였으나,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인 2006.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통계[11]에 의할 경우 벌써 827건에 이르러 연간기준으로 환산할 때 1,102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45.1%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2005년은 언론중재법의 시행이전 기간과 시행이후 기간이 나란히 있으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종전의 필요적 전치절차에서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임의적 전치절차가 되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의 감소요인이 있었음에도 대폭으로 조정신청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특히 주목할 만하다.[12]

3. 정정보도청구와 인터넷 신문에 대한 청구의 정착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새로이 마련된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언론중재법 시행 1년 남짓한 2006. 9. 30. 현재 2006.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조정신청 827건 중 418건이 정정보도청구로서 전체의 50%가 넘을 정도로 조정신청사건의 주력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그 피해구제율[13]도 65.7%에 이를 정도로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1) 언론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 온라인자료실 각종 현황 중 조정신청처리현황에 게시된 2006년 9월 조정신청처리현황(http://www.pac.or.kr/html/data/dt_status_view.asp?seqid=52&num=23&page=1&cur_pack=0&s_field=&s_string=&tbname=ptbl_pds11&j=23)의 통계자료(2006년 9월 조정신청처리현황.hwp)를 참조.

12)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임의절차라는 약점이 있지만 그동안 언론중재위원회가 쌓아온 업무성과와 신뢰를 생각하면 빠르고 정확한 분쟁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은 여전히 언론중재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는 지적으로는, 함석천,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언론중재 2005년 봄호, 52면.

13)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합의+조정결정중 동의+조정결정중 이의·조정불성립결정·취하중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게재된 건수)/조정건수

한편,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신청도 위 기간 중 57건으로서 전체의 6.9%를 차지하여 잡지(19건), 통신(9건)을 앞서고 있다. 이는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자리 잡았으며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인터넷 신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만일 포털사이트의 뉴스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에 대한 더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손해배상청구의 활성화

또한 새로이 언론중재의 대상이 된 손해배상청구도 활성화 되었다.

위 통계에 의한다면 2006.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전체 조정신청건수 827건 중 225건이 손해배상조정신청으로서 27.2%를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구제율도 58.8%에 달하고 있다.

원래 손해배상청구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와 비교하여 언론피해에 대한 간접적인 구제에 불과하고, 손해액산정이 어려우며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인 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처리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에서와 같은 신청건수의 비율이나 피해구제율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른 신청과 병합해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청구까지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원래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4]

14) 다만, 현재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언론사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주로 기능을 하고 있고 언론보도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고유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는, 조수정, “언론보도 분쟁의 재판 외 해결절차로서의 언론중재”, 언론중재 2006년 여름호, 84면.

5. 고유 의미의 중재청구의 접수 및 처리

언론중재법에서 새로이 마련된 고유 의미의 중재에 대한 신청은 극히 희소하여 초기에는 관련 조항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였으나(2006. 1.부터 8.까지 접수건수가 2건에 불과하였다), 2006. 9.에만 4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다.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의를 할 수 없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어서 분쟁 당사자 쌍방이 중재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점에서 적은 수효나마 고유 의미의 중재신청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6. 구술 및 인터넷 접수의 활성화

한편,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새로이 마련된 구술 신청과 인터넷 신청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언론중재법 시행일부터 2006. 9.말까지의 접수된 총 1,303건 중 구술신청이 44건, 인터넷 신청이 253건으로 합계 297건 22.8%에 이르고 있다.[15)]

IV. 앞으로의 과제와 개선점

1. 개 설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에 의한 새 언론중재제도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의 구제에만 의욕이 앞선 나머지 언론자유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그에 따라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15) 언론중재위원회 내부 자료에 의한 통계임.

으로 선언되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반론보도청구절차와 정정보도청구절차 간의 조정이 과제로 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관할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신청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편, 포털뉴스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포털 뉴스가 인터넷 신문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포털 뉴스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유 의미의 중재를 활성화하는 문제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단은 받지 아니하였지만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 시정권고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정정보도청구에 관련한 여러 문제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등 결정에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제도 그 자체는 정정보도로 인하여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신문의 자유와 진실에 부합한 정정보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피해구제의 이익 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나,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은 증명이 아닌 간이한 소명만으로 정정보도가 인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사에게 위축효과를 초래하므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중재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본문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부분, 제31조 후문'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하여 한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더 이상 가처분 절차에 의하여 재판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민사소송법상의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나. 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과 입증책임

(1) 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이는 반론권의 일종으로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작성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16]와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사의 이름으로 허위를 바로 잡아 진실에 부합되는 새로운 보도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17]로 나눠진다.

이는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정정보도청구가 언론사에게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를 언론기관의 이름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언론중재법 제2조 제15호는 "정정보도"를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언론사에게 언론사의 이름으로 새로운 보도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도 위 위헌결정에서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에 대하여 자신의 사실적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반론보도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

16) 김재협, "새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언론중재 2005년 봄호, 35면.
17) 김윤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논의",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28면.

구권이고[18], 정정보도는 '보도된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그 소송절차에서 확정하고 그에 따라 언론사의 이름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밑줄은 필자 첨가)[19]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후자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

정정보도청구에 있어 보도가 진실한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실무상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증책임에 있어 일반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발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20]이나,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언론사가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여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21]이고,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언론사가 그 보도가 진실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22]도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상 입증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발생사실, 즉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당연하고, 나아가 민법상 명예훼손책임을 물음에 있어 보도의 허위성을 청구인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 언론사가 보도의 진실성이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여도

---

18) 헌재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 헌재공보 117호 976면.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69면.
19) 위 헌재 결정, 헌재공보 977면,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72면.
20) 김윤정, 앞의 글, 29면; 양경승, 앞의 글, 72면; 황용경,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 언론중재 2005년 겨울호, 111면.
2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공2004상, 594) 등.
22) 전태진, "언론오보로 인한 인권침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6. 8. 10. 토론회 발표논문의 견해가 이에 가깝다.

이는 어디까지나 불법행위의 성립, 즉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는 것이고, 별도로 정정보도까지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보도의 허위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위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이 보도가 진실 되지 아니함이 입증된 경우에만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견해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는 종전의 정기간행물법 등에서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것인데 새 언론중재법이 정정보도청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종전의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으로 수용한 입법상의 미스로 판단된다.[23]

또한 정정보도청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보도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하고 언론사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면, 언론사로는 사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지 못하는 한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할 수 없게 하는 위축효과를 초래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앞서 본 위헌 결정 중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하여 …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이한 소명으로 대체하는 것은 …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24] 통설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

---

23) 같은 취지: 양경승, "언론중재법의 개정쟁점과 방향", 언론중재위원회 2006. 8. 30. 토론회 자료, 6면 참조.
입법론으로는 종전의 법규정 형식과 마찬가지로 반론보도청구권을 중심으로 규정을 하고 그 중 위 조항과 같이 정정보도청구의 성격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만을 준용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언론중재법의 개정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4) 위 헌재결정, 헌재공보 117호 977면,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72면.

다. 반론보도청구절차 등과의 조정

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단계

언론중재법은 새로운 권리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하고 이를 반론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와 병합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 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18조 6호).

이는 피해자의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긴 하나 정정보도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반론보도나 추후보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심리나 액수의 산정 등이 필요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가 병합된 경우는 물론 정정보도청구만을 하면서도 신속한 구제를 원하는 경우에 보도의 진실성 여부가 쉽게 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정정보도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려다가는 오히려 손쉽게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반론보도까지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를 분리하여 반론보도에 대하여만 먼저 결정을 내리거나 정정보도청구를 반론보도청구로 변경하도록 하여 일부만의 구제라도 먼저 부여함이 바람직하다.

⑵ 법원에서의 소송단계

소송단계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됨에 따라 기존의 절차 진행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입증도 소명이 아닌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여전히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는

반론보도청구의 소가 병합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정정보도청구의 소와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간의 변경, 병합을 인정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나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 간의 병합, 변경을 위해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도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견해[25]가 있다.

그러나 민사본안절차와 가처분 절차는 서로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이므로(본안은 엄격한 절차를 거친 증명을 필요로 하고 가처분 절차는 소명으로 충분하며 소명에 있어서는 증거의 즉시성이 요구된다) 변론을 병합할 수 없고,[26] 나아가 언론중재법이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와의 병합을 허용한 것은 정정보도청구의 소도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특별히 병합을 허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27], 아무리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반론보도청구의 소까지 본안소송절차에 따르도록 함은 재판의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요건사실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증명을 요구하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반론보도청구의 소의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른바 병행심리에 의하여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굳이 양자에 대한 동시적 해결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제의 신속성이 요청되고 입증이 그다지 어렵지 아니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 대하여 먼저 판결을 선고함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

25) 김윤정, 앞의 글, 32면. 김재협,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미발표 논문) 참조.

26)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23232 판결(공2003하, 1992) ("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변론을 병합할 수 없다")

27) 이는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볼 때,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에서는 손해배상청구와의 병합변경도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언론중재법 제18조 제6항), 소송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청구는 본안소송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 등과의 병합과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 참조)에서도 명백하다. 또한 대법원의 구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2005. 7. 13. 규칙 제1951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은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신청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대법원규칙은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변론을 열도록 하고 있어('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실제 사건 심리형식에 있어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므로 입법론적으로는 반론보도청구소송이나 추후보도청구소송도 모두 본안소송절차에 의하도록 하여 정정보도청구(나아가 손해배상청구소송)와의 병합이나 변경이 자유롭도록 하되 다만 반론보도청구소송이나 추후보도청구소송은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 인용하여야 함을 법문에 명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28)]

라. 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관할의 필요성

언론중재법은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하면서 종래 인정되던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의 관할에서 삭제하였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제기 기간이 단기간(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인 점에서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언론보도가 있었음을 미처 몰랐거나 법률지식의 결여 또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위 제기기간을 도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인바,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고, 다만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득이 법원에 소로써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로서는 간편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원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희망하는 수가 있을 것이므로, 민법상 정정보도청구에 대

---

28) 양경승, "언론중재법의 개정쟁점과 방향", 언론중재위원회 2006. 8. 30. 토론회자료, 4면.
실제로 2000년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피해구제법안에서는 반론보도청구소송도 본안소송절차에 의하되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 인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양삼승,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 2000년 겨울호, 44면, 52면 참조(법안 제34조 제2항 "법원의 심리는 민사소송법의 본안소송절차에 의한다. 다만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소명만으로써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하여도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피해자로서는 소송 외에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을 가질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로서는 언론으로 인한 분쟁의 포괄적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단기간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손해배상조정신청도 함께 관할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더 효율적이다). 나아가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닌 임의적 전치절차로 변경된 이상, 언론중재위가 민법상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조정까지 관할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구제가 지연된다거나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는 우려는 없을 것이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여러 문제

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피해의 범위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새로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손해배상, 즉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의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의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또는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29]이 있고,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언론보도의 진실성과는 무관한 초상권이나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이 성립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은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밑줄은 필자 첨가)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

29) 후자의 입장으로는, 윤경,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2005년 여름호, 37면.

14조 제1항에서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밑줄은 필자 첨가)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한정된다고 봄이 문리해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30]

한편, 언론중재법 제31조 제1항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제4절 소송"이라는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는 법원에 대한 청구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23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에 법원의 관여 없이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특별한 효력이 부여되는 만큼 언론중재위원회가 관할할 수 있는 조정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 저작권 등 그 성질상 보도의 진실성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는 물론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의 침해도 그것이 진실한 보도에 의한 것이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관할권이 없고 설사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진실한 보도로 인하여 초상권 등의 침해를 받은 자가 조정신청을 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없으나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언론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자는 위 합의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30)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은 특히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단순히 '피해자'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여 이를 구별하고 있다.

있고, 피해자가 위 합의를 초과한 액수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언론사는 위 합의를 근거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 또는 청구권포기가 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언론사가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는 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이나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은 모두 그러한 조정이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할권이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진실한 보도에 의한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이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할권이 없는 것이라면 언론사가 2회 불출석하거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관할권을 새로 부여하면서 오로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은 그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으로서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포괄적이고도 간편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당초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폭넓은 조정관할을 부여함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인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의 '피해자'를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언론중재법 제31조처럼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31]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 조정신청기간의 연장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은 언론에 의한 피해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당해언론보도가 있은 날로부

31) 특히 이 경우에는 보도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몰래카메라, 비밀녹음 등 취재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권리로서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조정신청기간을 위와 같이 단기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32)]

아마도 손해배상청구가 정정보도청구 등과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을 감안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의 제기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정정보도 등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도 손해배상만의 조정신청을 굳이 허용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나아가 피해자가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민법 제764조의 정정보도청구와 병합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조정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때에 비로소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4. 시정권고제도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은,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언론중재법 제32조는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도 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고(제2항),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나(제4항),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 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

32) 같은 취지: 양재규,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문화관광부 주최 2006. 8. 17. 토론회 발표논문, 41면.

위 조항이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시정권고 조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다만 시정권고 내용의 공표에 관한 제32조 제5항은 내용 공표 시 해당 언론사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33]

한편, 행정법상 명단의 공표는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시정권고에 대하여 시정권고내용공표제도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34]가 있다.

시정권고 및 그 내용공표제도는 그 취지에 공감할 바가 있다고 하여도 앞에서 지적한 바처럼 법리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를 행사하는 것은 국가가 언론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35], 다수의 개인이나 단체가 악의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시정권고를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사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36] 이를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순수 민간기구에 맡기거나(일반적으로 상당부분 국가의 규제가 허용되는 방송에 대하여는 그 보도에 관한 시정권고 및 그 내용공표를 방송위원회에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운용에 극히 신중하여야 할 것이며 적어도 시정권고내용공표제도는 폐지할 것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

33) 위 헌재결정, 헌재공보 117호 965면,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55면. 다만,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실제 공표가 있은 후에야 기본권 침해 여부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34) 양재규, 앞의 글, 43-45면.

35)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언론사측에서는, 시정권고제도에 관한 언론중재법 제32조는 대의적 헌법기관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에 대한 일반적 감시·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분립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위 헌재결정, 헌재공보 117호 1011면,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95면.

36) 권혁남,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언론중재제도의 변화와 과제", 언론중재위원회 2006. 7. 5. 토론회 주제논문집, 12면; 황용경,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 언론중재 2005년 겨울호, 112면.
참고로 언론중재위원회의 내부통계에 의하면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인 2005. 7. 28.부터 2006. 9. 30.까지 제3자에 의한 시정권고신청건수는 49건에 달하였으며, 처리된 31건 중 단 1건만이 인용되었다고 한다.

5. 포털뉴스 문제

오늘날 대부분의 시민들이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뉴스를 접하게 되고[37], 그로 인하여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 그 자체에 의한 것보다 보도로 인한 피해는 훨씬 더 커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포털뉴스는 스스로 기사를 생산한다기보다 단순히 매개만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 인터넷 신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로써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등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한 간편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포털뉴스도 독자적으로 제목을 붙이고 있고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를 게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행사함은 물론 기사를 어디다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단순한 뉴스전달자의 지위에만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포털뉴스 사업자가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짐이 당연하고[38], 또한 일반적으로 지방언론사가 뉴스통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를 단순히 매개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독자적인 책임을 지고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인터넷 포털뉴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의 충실을 도모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

37) 2005년 인터넷을 통해 매일매일 뉴스를 열람하는 독자는 총인구의 27.9%로 종이신문을 매일 구독하는 23.4%의 신문매체수용자를 추월했다고 한다. 황용석, "포털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포털뉴스의 언론적 특성과 그 영향-", 언론중재 2005년 겨울호 14면 참조.

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8300 판결은 인터넷 포털뉴스사업자에 대하여 포털뉴스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였다(이른바 전여옥사건).

V. 결 론

2005. 7.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언론중재제도, 나아가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제도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새로 도입된 고유 의미의 중재도 선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조정)가 필요적 전치절차에서 임의적 전치절차로 바뀐 뒤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조정신청이 줄지 않고 오히려 크게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편리하게 하였고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그 동안의 실적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를 가처분 절차로 심판하도록 한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써 언론중재법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관할권의 범위가 문제되고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신청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규정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또한 시정권고 및 시정권고내용공표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망되고 포털뉴스에 대하여도 언론중재법을 적용하여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언론중재법의 개정 시 위와 같은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더욱더 효율적인 언론피해구제제도가 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제2주제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양 재 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양 재 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

Ⅰ. 들어가며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관련된 쟁점들을 법률적으로 해부, 분석하기에 앞서 포털뉴스와 관련된 각계의 최근 동향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각 포털사별 최근 동향[1)]

가. 네이버(www.naver.com)

네이버는 NHN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다.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방문자수 2,953만 명을 기록하고 있어 방문자수[2)]를 기준으로 볼 때는 현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네이버의 최근 동향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2006. 8. 16.자 미디어오늘 2면에 실린 「네이버, 편집권 일부 언론사 이양」 제하의

1) 편의상 모든 포털사들을 다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2) 이 장에서 인용하는 포털사이트 관련 모든 통계는 매트릭스가 지난 8월 22일 발표한 '국내 13개 포털사이트 방문자수 추이'에 의존했음을 밝힌다.

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7월부터 각 언론사들을 돌며 네이버 운영방침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한다. 네이버가 언론사들에게 제안한 내용은 △ 뉴스 검색 시 아웃링크[3] △ 뉴스편집의 일부를 언론사에 맡기는 것 등이었다고 한다. 그 후 네이버는 어떤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을까?

일단, 지난 10월 10일부터 기사나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네이버뉴스 24시간 안내센터'를 가동,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4]. 또, 오는 12월부터는 기존 옴부즈만 코너를 확대, 개편하여 미디어 전문가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네이버 뉴스이용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5].

이들 개편 방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 뉴스 검색 시 아웃링크 △ 뉴스편집의 일부를 언론사에 맡기는 문제 등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네이버가 제시한 개편안에 대해서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한국경제, 경향 등 11개 신문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소속 신문사들이 네이버 개편안을 일단 유보하겠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6].

나. 다음(www.daum.net)

다음(Daum)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로서 위와 같은 기간 방문자수 2,874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역시 포털사이트이기 때문에 뉴스서비스에 있어서 다른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를 매개하는 것을 주로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와는 달리 '미디어다음'이라고 하여 자체 기사를

---

3) '아웃 링크'에 대해서 언론보도는 대개 "마우스로 누르면 해당 사이트의 기사로 이동하는 것"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웹사이트 연결 방식일 텐데 용어가 다소 생소하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존에 '딥 링크(어떤 웹 페이지에서 다른 웹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이기는 하나 그 웹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내부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라고 불리던 연결 방식과 유사한 것 같다. 현재 구글(www.google.co.kr)의 뉴스검색이 '아웃 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4) 아이뉴스 24(인터넷 신문), 2006. 9. 29.「네이버, "포털뉴스, 책임지겠습니다!"...24시간 안내센터 가동」

5) 상동.

6) KBS '미디어 포커스'. 2006. 9. 22.「포털 뉴스, 언론기능 외면 언제까지」.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상시 고용되어 있는 소속 취재기자 및 편집기자도 있고 '언론사별 뉴스보기' 코너 맨 상단에 '미디어다음'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7].

다음 역시 업계 추세에 발맞추어 뉴스서비스로 인한 분쟁예방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 8. 3.자 한겨레 18면 「포털들, 사회적 책임 이끌 위원회 꾸린다」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뉴스 편집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기구로 '열린사용자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음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언론사별 뉴스' 코너를 마련, 운영하고 있는데 이 코너는 각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라고 한다[8].

다. 네이트(www.nate.com)

네이트는 주식회사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로서 역시 같은 기간 방문자수 2,622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네이트 관련 최근 보도를 살펴보면, 최근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우리나라 포털 업계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엠파스'를 인수했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 포털 업계에서 NHN・다음커뮤니케이션・SK커뮤니케이션즈 '빅3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한다[9]. 또, 지난 7월 27일부터 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책무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포털 뉴스 최초로 편집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한다[10].

---

7) 전언(傳言)이기는 하지만 미디어다음의 경우에는 지난 신문법 제정 시에 적극적으로 언론으로 되길 원했다고 한다. 일응 미디어다음의 경우는 다른 포털의 뉴스서비스와는 달리 현행 신문법에서 요구하는 인터넷 신문 요건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판단된다. 독자적 기사 생산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기사도 올라오고 있다. 다만, 현행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에 해당되려면 전체 기사의 30% 이상이 자체 생산 기사여야 하는데 전체 기사의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 결격으로 인터넷 신문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8) KBS '미디어 포커스'. 2006. 9. 22. 「포털 뉴스, 언론기능 외면 언제까지」.

9) 중앙일보, 2006. 10. 19. 자. 「싸이패밀리 "네이버, 한판 붙자"」.

10) 한겨레, 2006. 8. 3. 자. 「포털들, 사회적 책임 이끌 위원회 꾸린다」.

2.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관련한 각계의 최근 동향

각 포털사들의 활발한 개편 움직임 외에도 학계나 정치계, 언론계를 중심으로 한 포털의 뉴스서비스 관련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작년 12월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포털저널리즘, 그 실제와 전망」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포털에 대한 개념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포털이 뉴스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아주 상세하게 제시해주었다. 또한, 제2주제 발표자 양삼승 변호사는 현행 언론중재법[11]의 해석상 포털을 인터넷 신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언론사닷컴과 더불어 포털의 뉴스서비스 역시 '자기 스스로 취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해 배포를 하고 가장 중요한 편집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언론중재법의 조정 및 중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2].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언론계의 관심은 어떠할까? 지난 9월 22일 방영된 KBS '미디어 포커스'에서는 「포털 뉴스, 언론기능 외면 언제까지」 라는 제목으로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사실상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EBS가 '생방송 토론 카페'라는 코너를 통해 「인터넷 포털 뉴스, 법적규제 해야 하나」 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특이한 주장이 펼쳐졌다. 현행 신문법으로 무리하게 포털을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포털의 규제와 진흥을 겸하는 '포털진흥법'을 새롭게 제정하자는 주장도 펼쳐졌다. 또,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는 포털의 특성상 뉴스서비스는 신문법으로, 동영상은 인터넷 방송법으로, 댓글은 기존처럼 정보통신망법으로, 전자상거래는 전기통신사업자법으로 규제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13].

---

11) 본래 명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이 논문에서는 약칭으로 부르겠다. 다른 법령의 명칭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약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12) 양삼승(2005).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법제적 쟁점과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도 정기세미나 종합보고서. p. 68.

13) 동아일보, 2006. 9. 30. 자.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신문? 논쟁 재점화」.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빼놓을 수 없다. 포털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3~4개 정도의 언론중재법 내지는 신문법 개정안이 제안된 상황이다. 먼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신문법에 포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포털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와 제목을 자의적, 선정적으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는 반대로 이승희 민주당 의원은 현행 신문법상의 인터넷 신문 개념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포털사이트를 신문법상의 인터넷 신문 개념에 포함시켰다. 또,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를 언론사가 아닌 '기사 매개자'로만 보아 "뉴스서비스제공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서는 포털 뉴스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사와는 달리 기사게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언론중재위원회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 발의와 더불어 지난 8월 31일 노웅래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포털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도 개최된 바 있다.

3. 최근 판결 동향

포털의 뉴스서비스 관련 최근 동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지난 9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뿐만 아니라 해당 포털에게도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14]. 보다 구체적으로 판결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형 인터넷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컷뉴스 소속의 한 기자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관련 기사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는 과정에서 '김 모 대변인'을 '전여옥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하였다. 이 기사는 몇 시간이 흐른 후 포털사이트 네이버로 자동 전송된다. 노컷뉴스 운영자와 네이버 운영자 사이에 이미 뉴스콘텐츠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기사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네이버 뉴스서비스란 중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8300 손해배상(기) 사건.

‘분야별 주요뉴스’ 코너에 「이명박 시장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 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사안에서 네이버 측은 심리과정에서 변소한 바와 같이 해당 기사의 작성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었다. 그저 뉴스콘텐츠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했을 뿐이다. 물론, 기사 제목 「이명박 시장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 는 네이버 측에서 작성하여 올렸지만 이것 역시 노컷뉴스 측이 전송해 준 기사 내용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오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기사 생산자인 노컷뉴스 측뿐만 아니라 매개자에 불과한 네이버 측에게도 인정하였다. 재판부가 네이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 엔에이치엔으로서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 간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 엔에이치엔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판결은 네이버 측의 항소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판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판결 하나만으로 우리 법원이 포털사에게 매개 기사의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이것이다. 가장 보수적인 입장인 법원의 시각에서도, 이제 포털이 기사를 생산하는 데에 관여하지는 않고 단지 매개만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피해의 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내 포털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Ⅱ. 이 글의 방향

이상과 같이 각 포털들의 동향에서부터 관련 판결에 이르기까지 각계의 최근 동향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다.

현재까지의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방안 마련 문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빠짐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따라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의 초점도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와 같은 이론적이거나 원론적인 문제에서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피해구제방안인가?"와 같은 구체적이면서 실무적인 문제로 옮겨져야 한다[15].

본 논문이 목적하는 것도 이와 같다.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든가 "무엇이 최선의 피해구제방안인가?"에 대해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최선의 피해구제방안 마련과 관련된 실무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다.

- 포털뉴스와 정정보도
- 포털뉴스와 손해배상
- 포털뉴스와 기사삭제 또는 기사게시중지

15) 주지하다시피, 작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의 주제가 '포털저널리즘, 그 실제와 전망'이었다. 이 세미나는 포털이 우리 사회에서 언론으로서 이미 충분히 기능하고 있으며, 사회적 파급력이 얼마나 막대한가를 직시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언론중재법의 해석상 포털을 인터넷 신문으로 볼 수 없는 입법상의 공백이 발생했음을 날카롭게 지적함으로써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임을 공론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1년이 흐른 지금, 다시 작년과 비슷한 영역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보다 실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들 실무적인 쟁점 검토에 앞서서 총론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포털의 뉴스서비스 관련 다양한 시각의 대립

포털의 뉴스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참 어렵다. 그 이유는 포털의 뉴스서비스 또는 그로 인한 피해구제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이 대립하고 있고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를 좁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몇 가지 주된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본다[16].

1. "언론이다" vs "언론이 아니다"

포털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이곳이다. 그 당부를 떠나 일단, 현재의 대세는 언론[17]으로 보는 입장이다.

가. 언론으로 보는 입장

포털을 언론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매우 다양하다. 첫째, 언론관계법은 아니지만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의 '인터넷 언론' 개념에 따르면 포

16) 이 장의 논의는 견해의 대립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대립되는 견해 중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았다.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17)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어디까지나 직업적 전문인으로서의 언론인에 의해 만들어진 뉴스의 제작, 전송, 복사 행위를 의미한다. 흔히 'journalism' 혹은 'journal'이라고 번역되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언론은 아닌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황용석(2005). 포털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도 정기세미나 종합보고서. pp.16~17을 참고하기 바란다.

털 역시 인터넷 언론에 해당된다. 공선법 제8조의 5는 '인터넷 언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언론관계법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설득력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포털은 이미 입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언론으로 규정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뉴스의 소비라는 측면에서 포털은 주요 소비처가 되었다[18]. 인터넷이라는 뉴스 소비의 새로운 공간에서 네이버·다음·네이트 3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기존 언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닷컴의 이용자수를 월등히 능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이신문을 매일 구독하는 독자가 총 인구의 23.4%인데 비해 인터넷을 통하여 매일매일 뉴스를 열람하는 독자는 27.9%라고 한다. 또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열람하는 독자들의 주된 뉴스 소비사이트는 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파란-조인스닷컴-조선닷컴-동아닷컴 순이라고 한다[19]. 시장 구조적인 측면에서 포털의 압도적 우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 같다.

셋째, 뉴스의 생산·공급 측면에서도 포털은 언론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편집'과 '배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배포력에 있어서 포털은 이미 기존 언론사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막강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각 포털들은 공급받은 기사의 제목을 수정도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도 한다. 다시 말해, 어느 기사를 메인에 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름대로의 해석 작업을 통해 기사의 중요도를 평가, 배열하고 있는 것이다. 포털의 이러한 기능을 통해 사회적 의제까지도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

18) 물론, 이것은 인터넷뉴스 시장을 염두에 둔 말이다.
19) 황용석(2005), 앞의 책. pp. 26~27.

나. 언론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

이러한 견해와는 반대되는 것이 포털은 뉴스 유통사일 뿐이지 뉴스 생산자(언론사)가 아니라는 견해이다[20].

일단, 이 견해를 취하는 쪽에서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개별 사업자들이 전통적인 언론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다. 즉, 현행법상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모두 전기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작게는 주무 행정부처[21]가 달라지고, 크게는 근거 법령도 달라진다.

또, 언론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기사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론으로 보기 어려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주장한다.

2. "구제"적 관점 vs "규제"적 관점

포털 뉴스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피해구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행정규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것은 포털을 언론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입법에 있어서 포털 관련 규정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중 어디에 둘 것인지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일단, 포털을 언론으로 보지 않는 시각에서는 신문법에 규정하여 언론사에 준하는 행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포털을 언론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포털 관련 규정을 신문법에 둠으로써 행정규제와 피해구제 두 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도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에 둠으로써 행정규제의 문제는 차차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피해구제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할 수도 있다.

---

20) 각 포털들이나 인터넷기업협회 쪽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주로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 전통적인 언론사들의 주무 부처는 문화관광부이거나 방송위원회가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처는 정보통신부가 된다.

언론보도에 나타난 각 포털들의 입장은 대체로 피해구제적 접근법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포털을 뉴스 유통사로 보아야지 언론사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우선 이용자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22]. 이것은 각 포털들이 '열린사용자위원회'라든가 '미디어책무위원회' 등과 같은 자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3. 정리

각주 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장에서의 논의는 어떤 견해가 타당하다거나 어떤 견해를 지지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관점의 차이는 포털을 바라보는 이념 혹은 세계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되거나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면이 분명 있다. 다만, 전적으로 타당한 견해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데에 집중하는 방향을 갖고 구체적인 쟁점별 검토에 들어가고자 한다.

Ⅳ. 【각론 1】 포털뉴스와 정정보도[23]

1. 논의의 배경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의 보도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

22) 동아일보, 2006. 9. 30. 자.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신문? 논쟁 재점화」.
23) 이 장에서의 논의는 정정보도 외에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정보도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는 반박적 주장의 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전자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하고, 후자는 '반론보도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의 행사가 포털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다 같은 기사인데 단지 그 게재된 위치가 포털인지, 아닌지에 따라 권리행사의 가능성이 좌우된다 하니 일단 상식적인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예를 한 번 들어보자. A라는 기사가 오늘자 B신문사 조간신문에 실렸다. A기사는 B신문사와 뉴스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C포털에 전송되어 C포털에도 게재되었다. 그러니까 A기사는 B조간신문 지면과 C포털사이트 화면에 실린 것이다. 일반인의 시각에 B신문에 있는 것이든 C사이트에 있는 것이든 다 같은 기사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B신문에 인쇄되어 있는 것만이 기사 혹은 언론보도인 것이다. 이것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사람들의 눈에 C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A는 신문기사로 안 보여야 한다. C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A 역시 신문기사로 보이는데 언론보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 포털 측의 항변

물론, 이에 대해서 포털 측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저작권. 포털은 정정보도청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저작권 문제를 거론한다. 포털이 매개하는 기사에 대한 저작권이 기사의 생산자인 언론사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들 임의대로 기사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둘째, 계약상의 문제. 포털은 기사콘텐츠 공급자에 해당하는 언론사와의 계약내용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저작권 문제와 함께 포털이 기사로 인한 법적 책임 이행 문제에 있어서 기사 공급자이자 생산자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뒤에 숨는 상황을 연출한다. 이 점에 관한 각 포털들의 입장은 일치되어 있다.

셋째, 운영주체의 문제. 포털 측은 포털사업자를 언론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포털사업자는 분명 전통적인 모습의 언론사와는 많이 다르다. 법률적으로도 전기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3. 포털의 항변에 대한 법률적 검토

가. 저작권 문제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르면, 시사 보도는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사 보도는 인사왕래・사망기사・화재・교통사고 등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기사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24]. 그러므로 기자의 사상과 견해가 포함된 대부분의 기사는 어문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사에 대한 저작권이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게 있으므로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포털 측의 항변은 타당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부정적이다.

먼저, 정정보도는 원 기사 자체를 가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원 기사의 내용이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아주 무관하다. 오히려 정정보도는 원 기사가 보도되었음을 전제로 그것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있느냐 문제는 원 기사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24) 송영식・이상정(2003). 『저작권법개설』 (제3판). 서울: 세창출판사. p. 102.

나. 뉴스콘텐츠 제공계약상의 문제

한편, 포털의 정정보도 이행 문제는 언론사와 포털 간에 체결하는 뉴스콘텐츠 제공계약 체결 시에 정정보도를 포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되면 아주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조항이 거래 관행상 뉴스콘텐츠 제공 계약 시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25]. 그렇다면 이런 계약상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자로부터의 정정보도청구를 포털 측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먼저, 거부의 이유로 드는 포털과 언론사 간의 뉴스콘텐츠 공급계약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일종의 계약(契約)이다. 계약이란 넓은 의미에서 2인 이상 당사자들의 합의인 것이고, 서로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된다.

이와 같은 계약은 어디까지나 계약에 동의한 계약당사자만을 구속한다. 계약상의 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계약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포털과 언론사 간에 체결된 뉴스콘텐츠 공급에 관한 약정의 효력은 포털과 언론사에게만 미친다. 계약사항과는 무관한 제3자, 즉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보도 피해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포털과 언론사 간의 계약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무는 법에서 정한 다소 강제성을 띤 의무이다[26].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

25)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뉴스 시장에서의 포털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막대한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포털에게 기사를 공급하려는 언론사는 많고 포털, 특히 네이버・다음・네이트 같은 빅3의 경우에는 자신의 입맛대로 뉴스콘텐츠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뉴스콘텐츠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시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포털 측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언론사와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도 든다.

26) 이 말의 뜻을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말기 바란다.

발생하는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다. 그래서 포털 뉴스 역시 언론보도로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일반적인 정정보도청구 시에 갖추어져야 할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일단 정정보도의무는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다. 운영주체의 문제

현행 언론중재법이나 신문법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뉴스통신 및 인터넷 언론과 같은 각 언론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으로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언론사로 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는 다르다. 현행법의 규정형식에서 중요한 것은 언론으로 볼 수 있느냐 문제이지 언론사로 볼 수 있느냐 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 포털에 게재된 기사를 언론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를 운영하는 사업주체가 비록 전통적인 언론사와 다르더라도 이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27].

라. 보론: 전문보도(傳聞報道)의 법리에 관하여

언론보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보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즉, 뉴스통신사와 같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전재하는 경우, 다른 언론보도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그리고 독자투고라든가 기고문 등 많은 형태의 전문보도가 존재한다.

---

27) 이와 유사한 문제점은 다른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대학신문의 경우, 각 대학신문은 정기간행물,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의 언론사는 누가 될 것인가? 언론중재법에서는 이에 대해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해당 대학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는데 이것은 대학신문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총학생회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법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총학생회나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역시 전통적인 언론사와 매우 다르다.

실제로 많은 언론사들이 뉴스통신사들과 전재계약을 체결하고 기사를 전재하고 있다. 이들 언론사들은 포털처럼 기사의 매개자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포털이 정정보도를 할 수 있느냐 문제는 포털 영역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고, 매개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의 문제 일반으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비교에 대해서 포털과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전재하여 싣고 있는 언론사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과 같이 언론사와 포털의 법적 지위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법적 지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뉴스통신사와 전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언론사 역시 해당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또한 해당 기사의 생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른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 포털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 전문보도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법리가 포털 영역에도 그대로 혹은 유추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은 전문보도의 법리를 보여주는 판례들이다.

"피신청인은 ○○동에 있는 위 토지가격의 축소신고에 관한 기사를 ○○○○. ○. ○○자 신문의 보도를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비록 피신청인이 다른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신청인의 신문에 게재한 이상 그 내용 중의 사실적 주장은 피신청인의 그것을 게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28]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가 연구비판의견 또는 견해에 관한 발표를 요약, 인용한 것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반론보도청구권의 목적이 언론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여 올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3. 7. 30. 선고 93카합312 판결

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사실적 주장이 공표된 이상 다른 사람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29]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도는 일반적인 기사의 형식으로 보도되든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보도되든지 그 보도의 형식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30]

결국,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적시 여부이지 보도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31]. 그러므로 포털에 게재된 매개기사에 대해서도 공표의 최종 매개체가 된 포털에게 정정보도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포털 측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32].

4. 정정보도청구절차에 관한 논의들

그러면, 포털의 정정보도의무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

29) 서울고등법원 1999. 5. 27. 선고 98나64969 판결
30)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12. 11. 선고 87카40175판결
31) 윤재윤・함석천(2005). 『언론분쟁과 법』. 서울: 청림출판. p. 206.
32)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발제를 맡은 양삼승 변호사는 "그러면 네이버 측에서 가지는 의문은 언론사와의 계약에 의해 임의로 기사를 손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을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의미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편집권이 있는데, 즉 언론사로부터 기사가 잘못된 기사라고 하면 뺄 또는 올리지 않을 권리, 책무, 편집권이 있는데 언론사와의 계약에 의해 그 편집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네이버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언론사와 계약을 할 때 포털에게 편집권이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언론사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라고 말한 바 있다.(언론중재위원회 2005년도 정기세미나 종합보고서, p. 89.)

가. 문화관광부의 입장[33)]

이 문제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피해자가 뉴스 생산자뿐만 아니라 매개자에게도 선택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포털이 피해자로부터 정정보도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언론사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만일 언론사(기사생산자)가 피해자로부터 청구를 받았으면 그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 및 정정보도를 한 경우에 그 내용을 포털에 통보하고 포털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전태진 변호사의 견해[34)]

이 견해는 매개기사의 진위 여부에 관한 다툼은 원 기사의 출처인 언론사와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래서 분쟁의 가닥을 기사의 출처인 언론사와의 다툼으로 좁히고 여기서 결론이 나면 기사를 공급받은 언론사는 무조건 그에 따르라는 식으로 피해구제 절차의 간명화(簡明化)를 시도하고 있다.

다. 소결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떤 하나의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정정보도를 청구함에 있어서 피해자는 기사생산자인 언론사를 상대로 할

33) 언론관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2006. 8. 2.), 문화관광부. p. 15.

34) 지난 8. 10. 민언련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았던 전 변호사는 "포털에 대한 직접 청구도 필요하지만,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는 궁극적으로 뉴스생산자인 언론사와 다투어야 하므로 1차적으로 언론사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별도의 청구없이 포털사이트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고, 포털은 이를 게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 보다 간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 아니면 포털을 상대로 할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35]. 제 아무리 단순 매개기사일지라도 일단 자신의 공간 또는 이름으로 공표되었으며 포털 측에게 편집권한, 삭제권한이 있다면 그 기사에 적시된 사실적 주장은 해당 포털의 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체생산기사인지 매개기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된 모든 언론사나 포털들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36].

둘째로, 정정보도청구에 있어서 피해자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편의조항을 넣어야 할 것이다. 즉, 피해자가 원 기사의 출처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여 해당 언론사가 당사자의 정정보도 등을 받아들여 해당 보도문을 게재하거나 이미 게재한 경우 및 조정이나 소송과 같은 법적 구제절차에서 정정보도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즉시 자사와 기사공급계약을 맺은 다른 언론사 및 포털들에게 해당 사실(정정보도의무 이행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보를 받은 언론사들은 역시 지체 없이 정정보도를 게재할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피해자는 원 기사로부터 기사를 공급받았을 수많은 언론사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상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위 첫 번째와 같이 선택적 청구권한을 가지는 피해자가 자신에 관한 기사가 어디에, 얼마나 뿌려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그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이에 관한 정보를 원할 경우 원 기사의 출처인 언론사는 어떤 언론사나 포털들에게 기사가 제공되었는지 그에 관한 정보를 줄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35) 오히려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을 배제하고 기사생산자인 언론사에게만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부당한 권리의 제약이라고 생각한다. 즉, 현행법 하에서도 피해자의 포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법 제764조에 근거하여 피해자는 포털 측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곧바로 정정보도인 것은 아니겠지만 정정보도 내지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보도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6) 최근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인터넷 신문을 인터넷 언론으로 개칭하고 이 인터넷 언론 속에 언론사 닷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안 제2조 제8호). 이에 따라 오프라인 매체의 기사를 단순 매개하는 언론사 닷컴 기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안 제5조 제2항).

5. 보다 더 생각해 볼 점

포털과 정정보도의 문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음을 밝힌다. 포털에의 정정보도권한 인정이 혹시 기사제공자 혹은 생산자의 입장에 있는 언론사들의 포털에의 종속화 현상을 재촉하는 것은 아닐까? 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 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논지가 흐려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포털에게 정정보도권한까지 주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대책 외에 다른 방식의 안전장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Ⅴ. 【각론 2】 포털뉴스와 손해배상

1. 쟁점의 특성

포털뉴스와 손해배상의 영역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 즉 △ 포털의 주의의무의 유무와 그 범위 △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격과 내부 구상문제 △ 기사를 수정한 경우 그 책임소재의 변화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하다.

그런데 위에서 제시한 쟁점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분명히 밝혀둘 것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위 Ⅳ.에서 검토한 「포털뉴스와 정정보도」 의 문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포털뉴스와 손해배상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법리로 풀어야 하고, 풀릴 수 있는 문제다. 포털이 언론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37]. 포털을 언론으로 보지 않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얼마든지 야기될 수 있는 당면한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간 설왕설래만 있었지 이 부분에 관한 이렇다 할만한 판례가 없었는데 첫 장에서 소개한 2005가단18300 판결을 계기

37) 다만, 포털이 언론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현재와는 달리 중재위원회 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에서의 절차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로 포털의 오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이 장에서의 논의 역시 위 2005가단18300 판결이 중심이 될 것이다.

2. 오보에 따른 면책의 가능성에 대하여

가. 포털 측의 항변

포털에 하루 올라오는 기사는 몇 건이나 될까? 네이버의 경우에는 대략 8,000건 정도 되는 것 같다[38]. 각 포털의 사정에 따라 정확한 건수는 차이가 나겠지만 나머지 다른 포털들도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기사 중 오보를 가려내기란 정말 불가능해 보인다. 오보가 날 것에 대비하도록 요구하면 무리인 것 같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위 2005가단18300 사건의 당사자였던 네이버의 방어논리이기도 하다[39].

실제 소송에서도 네이버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엔에이치엔은 위 기사작성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단지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이며, 제목 또한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에 의존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네이버의 주장과 같이 포털에게는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이 없는 것일까?

---

38) ZDNet Korea, 2006. 10. 17. 자. 「네이버 전여옥 의원 법원 판결 항소」.

39) 상동: 위 기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와 같다. '하루에도 8000여 개가 넘는 모든 뉴스에 대해 포털 사업자가 오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네이버의 입장이다. 네이버 측은 법원이 포털의 입장을 이해해 한 번 더 심사숙고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번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재판부의 판단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앞에서 이미 제시했다[40]. 관련 부분의 요지를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 포털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가 언제라도 접속하여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험이 상존한다.
- 그러므로 이러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에게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과 달라서 기사의 대상인물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항시 주의할 의무가 있다.
- 포털의 이러한 주의의무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 나온다.

이러한 재판부의 관점은 우리 법체계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 헌법적으로 '명예'는 보호되어야 할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이다(헌법 제21조 제4항). 때로 알권리와 충돌하기도 하여 비교형량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을 담고 있는 법률은 많다. 언론중재법 제5조 인격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러하고,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부터 제310조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및 형법 제310조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5조 ②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40) Ⅰ의 3.항 참조

이들 규정에 비추어보면, 이 명예를 보호해야 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경우는 단 한 가지, 그 공표한 내용이 공공성을 띠고 진실하거나 진실하지는 않지만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가리켜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부른다.

다. 네이버 측의 주장이 과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라는 관점에서 다시 네이버의 항변을 나름대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 네이버는 해당 기사 작성에 개입하지 않았고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모른다.
- 네이버는 노컷뉴스가 전송해 준 기사가 진실일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게재했을 뿐이다.
- 해당 기사의 제목은 우리(네이버)가 달았지만 전송해준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
- 그러므로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이 없다.

이렇게 재구성해 놓고 보니 네이버 항변의 실체가 드러난다. 네이버가 하고 있는 말은 결국 기사콘텐츠 제공자 측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기사는 허위였다. 허위의 기사라 하더라도 공표 당시에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위법성조각사유'이다. 그런데 네이버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상당성이 있겠는가? 그저 기사콘텐츠 제공자 측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된 판결로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이 있다.

"언론매체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참작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자기 책임 하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

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일간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은 취재시간이 제한된 탓에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과장 보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진실로 믿기 위하여는 더욱 더 진위 여부의 확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은 경찰 출입기자가 없는 한 영자신문의 기자가 경찰의 보도자료, 연합통신의 보도문, 다른 신문의 기사, 방송매체의 방송내용을 참고하여 마치 이를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41]. 책임 인정의 주체가 신문사이고, 따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도한 경우라는 점에서 포털과는 경우가 아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밑줄을 친 부분이다. 한 마디로 기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실로 믿었다고 해도 그 신뢰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42]라든가,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43]를 믿은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상당성을 인정받기란 어렵다.

결국, 사적(私的) 계약인 뉴스콘텐츠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된 것에 불과한 기사를 진실하다고 믿었다는 포털 측의 항변만으로는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나아가 면책의 가능성도 없다.

라. 과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지 여부

다른 한편으로, 이번 네이버 관련 판결의 초점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명예훼손에 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 언론보도에서 읽을 수 있었던 네이버 측의 입장[44]은 이것에 가깝다. 즉, 하루에도 수천 건

41) 윤재윤・함석천(2005). 앞의 책. p. 119.
4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8389 판결
4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4406 판결
44) 각주 38) 39)를 참고하기 바란다.

의 기사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문제의 기사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는 것을 포털은 주장하고 싶은 것인지 모른다.

사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행위에 대한 가해자 측의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한다(민법 제750조). 명예를 훼손할 의도(고의)가 있었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하다. 포털에 올라오는 수많은 기사들, 이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포털 측에서도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의의무가 없을 수 없고 과실이 있음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포털 측에서는 기사의 건수가 너무 많아 오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사의 '건수'에 원인을 돌리는 것은 핑계라는 생각이 든다. 건수가 너무 많은 것이 정말 문제라면 감당할 만큼만 올려야 할 것이다. 포털에 하루 8,000건씩 기사를 올려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설령 기사의 건수가 줄어들어도 기사의 매개를 주로 하고 있는 포털이 무슨 수로 오보를 잡아낼 수 있을까? 가령 너무 퇴폐적인 내용이라거나 혐오스런 사진, 비방이나 욕설 등이야 걸러낼 수 있겠지만 취재를 하지 않는 포털은 사건의 진위 여부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보를 잡아내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3.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격과 내부 구상문제

가. 포털이 취할 수 있는 대책

위 2.항에 따르면 포털의 입장은 참 답답할 것이다. 오보를 잡아낼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서 오보가 나기만 하면 무조건 그 책임을 지라니 말이다. 그런데 오보에 따른 포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포털에게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볼 때, 오보의 일차적인 원인은 기사를 제공

한 쪽에 있다. 그러므로 오보 사태로 인한 궁극적인 책임의 소재 역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포털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사를 생산하고 제공한 언론사 쪽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다. 오보가 발생함으로써 포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기사콘텐츠 제공자 측에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두어야 한다[45].

나. 부진정연대책임과 구상권 행사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격

뉴스콘텐츠 제공계약 체결 시에 오보에 따른 모든 책임이 기사 생산자인 언론사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임을 앞서 말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정이 없으면 책임관계는 어떻게 될까?

포털에 게재된 잘못된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것은 민법 제760조에 규정된 '공동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뉴스콘텐츠를 제공한 언론사의 기사생산행위와 포털의 공표행위라는 복수의 사람의 행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공동해서 결국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다[46].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47].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45) 물론,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실현불가능하면 무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포털이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뉴스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생각할 때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46) 곽윤직(2003). 『채권각론』 (신정판). 서울: 박영사. p. 527.
47)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연대책임에 비해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가 더 좁다.

다[48].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대하여'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각자가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하고, 또 채무자 1인이 배상하면 다른 채무자도 그 배상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여러 명의 불법행위자로부터 1회의 만족을 얻을 뿐이다[49]. 다만, 여러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상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결국,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 언론사와 포털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어느 쪽이라도 손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을 마치면 다른 한쪽까지 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2) 책임의 분담과 구상권 행사

그 다음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상, 내부적 책임 분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 전부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50]. 이것을 구상권 행사라고 한다.

위 2005가단18300 판결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 다음과 명시하였다.

"피고들 간의 내부 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 엔에이치엔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의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엔에이치엔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실무에서 주의할 점

이와 관련해서 중재위원회 조정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지금 당장

48) 곽윤직(2003). 앞의 책. p. 526.
49) 이은영(2000). 『채권총론』(개정판). 서울: 박영사. p. 513.
50) 이은영(2000). 앞의 책. p. 515.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포털이 언론사로 인정될 경우에는 포털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오보로 인한 포털과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책임임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가 여러 개인 경우, 신청인이 동일인이더라도 언론사에 따라 사건을 별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무 관행에 비추어보면 포털과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사건이 서로 다른 중재부에서 진행될 수 있고, 배상책임이 언론사별로 각각 산정될 수 있다. 포털과 언론사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소결

이상에서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포털은 결국 당사자 간 약정으로써 혹은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상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최종적인 책임은 기사 생산자인 언론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점에 맞추어 포털 스스로도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를 바란다.

4. 포털에 의해 임의로 수정된 기사로 인한 책임 소재

가. 검토의 배경

포털이 기사를 단순 매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메인 고정기사의 제목 수정 비율이 포털 '다음'의 경우에는 부분수정이 72.8%, 전면수정이 10.6%라고 하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부분 수정이 64.5%, 전면수정이 11.3%라고 한다[51].

51) 매일경제신문. 2006. 9. 22. 자. 「신문기사 제목, 포털에선 제멋대로」.

이러한 현실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나. 기사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의 가능성

일반적으로 독자들은 기사를 읽을 때 제목부터 읽어 내려간다. 바쁠 때는 기사의 제목만 훑어보기도 한다. 이러한 독자의 생리를 잘 아는 신문사들은 독자의 이목과 관심을 끌만한 제목을 달고자 한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다. 그래서 정작 기사 본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사 표제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기사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 명확히 판단을 내린 판결은 없지만 참고가 될 만한 판결이 있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은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기사 제목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신문사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즉, 모 언론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기사를 보도하면서 '김정일에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서신' 등의 제목을 반복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제목을 놓고 봤을 때 기사의 대상 인물들이 마치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기사 본문의 내용은 문제가 없었지만 이러한 잘못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것이다.

다. 포털에의 적용

그러므로 기사의 제목[52]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있는 포털 업계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본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포털의 기사 제목 편집으로 말미암

52) 이와 관련해서 기사의 제목과 인덱스(메인화면에 표시되는 식별표지)를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목인지, 인덱스인지 중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별해 볼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는 명예훼손책임 문제가 언제든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의 책임은 오로지 기사의 제목을 임의로 단 포털만의 책임일 것이다.

Ⅵ. 【각론 3】 포털뉴스와 기사삭제 또는 기사게시중지청구

1. 문제의 제기

포털과 관련된 또 하나의 쟁점은 기사삭제 내지는 기사게시중지청구권 문제이다. 실무 경험에 비추어보면, 온라인 기사는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기사가 문제 있는 것으로 밝혀진 후에도 인터넷상에 지속적으로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피해상황이 종료되어야 하는 단계에서도 피해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피해 유형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예컨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사진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경우 해당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광범위하게 복사, 전송될 수 있다. 또, 사실과 다른 기사에 대해서 정정보도문까지 게시되었지만 잘못된 기사 원문이 그대로 온라인상에 방치되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비단 포털만의 문제는 아니다. 포털 외에 인터넷 신문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신문 관련해서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게시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기사삭제 또는 게시중지 청구권의 법적 근거

이와 같은 기사 삭제 또는 게시중지 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이 실체법상의 근거 규정이다. 즉, 어떤 규정을 근거로 포털 등에게 기사의 삭제

또는 게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느냐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대략 두 개의 규정을 고려해 볼 만하고, 아니면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 민법 제214조

인격권이 가지고 있는 물권적 성격에 주목하여 소유권에 근거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규정인 민법 제214조 규정을 인격권 방해 행위 제거 시에도 유추(類推)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가해자 측의 고의라든가 과실과 같은 별 다른 요건 없이 단지 방해 행위가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마련해놓고 있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와 비교해볼 때, 기사삭제 또는 게시중지 청구 시 그 원용 가능성 유무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보다 확실한 규정이다.

다. 검토

그러나 이들 두 규정 모두 각각의 단점이 있다. 먼저, 민법 제214조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소유권에 관한 것으로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려면 유추적용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은 규정의 위치도 매우 부적절하고[53], 가해자 측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즉, 가해자 측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이 규정을 원용하여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신문이나 포털에 대해서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것이다. 입법 시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3. 기사의 삭제 또는 게시중지 청구 요건

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먼저,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는 그 성격상 원상회복청구권에 가깝기 때문에 권리의 성립요건으로서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나.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다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즉, 명예훼손이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외에도 초상권이나 성명권과 같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도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지난 10월 10일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3조의 2 제1항은 그 청구권자를 '명예가 훼손되거나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의 없이 찍힌 사진과 함께 게재된

53) 언론중재법 제30조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고, 표제 역시 '손해의 배상'이다. 또, 제4절 소송 편에 속해 있어서 법원의 소송절차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기사[54]의 경우에는 그 삭제나 게시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 또, 이미 무죄가 판명된 사건에 대한 범죄혐의 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삭제나 게시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

물론,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에 불과한 경우에는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의 절차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청구의 문제에서 핵심은 피해구제절차와 관련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제도로도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청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만으로는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본다.

법원의 재판절차 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다면 중재위원회를 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가. 제1안: 기존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먼저, 기존 조정절차를 따라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의 청구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미 오랜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또, 신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7일 전후로 심리기일이 잡히기 때문에 빠르면 1주일 전후로도 피해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

물론, 기존 조정절차는 신문이나 방송 등 기존 매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55].

---

54) 흔히 '포토뉴스'라고 부르는 것이다.

55) 조우성(2006). 포털 및 인터넷상의 언론보도 피해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노웅래 의원실 주최 '포털 뉴스 서비스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2006. 8. 31.

나. 제2안: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인터넷 뉴스 피해구제 심의위원회[56]'를 통하는 방법

역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3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포털이나 언론사 닷컴이 매개하는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하였거나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가 게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57]에 중재위원회에 게시중지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 사실을 기사 생산자인 언론사와 매개자인 포털 등에게 통지한다(제2항)[58].

위와 같은 중재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언론사 및 포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기사의 진실성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제3항).

중재위원회는 언론사 및 포털 등이 위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를 기다린 다음, 늦어도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제출된 모든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 및 명예훼손성을 심사하여 게시중지조치 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 결정한다(제4항)[59].

이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사게시중지는 일단 잠정적인 조치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기사 삭제는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위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게시중지결정을 받은 이후 2월 이내에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이나 중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조정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게지중지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제6항)[60].

---

56) 이하 '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

57) 신청 기간이 매우 단기이다.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게시된 날로부터 45일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58) 이 기간이 대략 1~2일이 걸릴 것이다.

59) 예컨대, 11월 20일 심의위원회에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다음날 언론사에 접수 사실이 통보되었다면 늦어도 11월 27일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장 2주에서 3주까지도 걸릴 수 있는 조정절차에 비해 상당히 신속한 피해구제절차임은 분명하다.

60) 이 외에도 각하되거나 신청 등이 취하된 경우 역시 게시중지 효력이 상실된다.

어쨌든 위 안에서 제시한 방법은 신속, 간명하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다툼의 폭을 포털이 아닌 기사 생산자인 언론사와의 문제만으로 좁히고 있다.

다. 검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제2안보다는 제1안을 선택하고 싶다. 제2안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시적이라는 하지만 소명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기사게시중지를 명령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하루에도 수 천 건의 새로운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온라인 매체의 현실인데, 2개월 게시중지는 실질적으로 기사 삭제를 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 모를까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게시중지를 명한다면 아마도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 방어권 보장이 틀림없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 소명을 요한다는 점도 문제다. 언론사 측에서는 이것이 미흡한 절차권 보장과 연결이 된다. 그런데 신청인 측에서도 소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미흡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중재위원회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염려가 된다. 자칫 중재위원회의 성격을 분쟁의 조정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로 인식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조심스럽다.

또, 게시중지결정의 효력도 모호하다. 과연 집행력은 갖는 것인지, 게시중지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언론사나 포털 등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 개정안은 침묵하고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조정절차를 이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인터넷 기사 삭제나 게시중지를 전담하는 중재부를 현 중재위원회 안에 설치한 다음 현 절차의 진행을 보다 신속하게 한다면 첫 심리기일을 접수일로부터 7일 전후에서 조금은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 조치도 마찬가지다. 조정절차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설령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으므로 권리침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5. 소결

2006서울조정○○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처음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했다. 그러나 심리 과정에서 "정정이나 반론보도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다시 언급하게 되므로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기사의 삭제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언론사 측에서도 받아들여 기사 삭제 외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역시 또 다른 사건(2006서울조정1○○)에서는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구했으나 언론사가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함에 따라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이와 같은 조정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존 조정절차를 이용한 기사 삭제 내지 기사게시중지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

Ⅶ. 나오며

이상에서 살펴본 포털 뉴스 관련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지루한 반복이라 생각되어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말로써 나오는 말을 갈음하고자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포털 뉴스 관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는 행정규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들이 있고, 피해구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포털 관련 규정을 신문법에 넣을 것인가, 언론중재법에 넣을 것인가로 이어진다. 물론, 신문법에 넣어서 포털 역시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할 필요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

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규제적 접근법을 고수했을 때 포털에 대해서 행정규제를 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는 논쟁거리가 될 것이고 이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는 그 시간에도 포털로 인한 피해는 확산되고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는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와는 별도로 일단 시급한 피해구제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다. 행정규제적 접근법에 비해, 피해구제적 접근은 상당히 사회적 합의도 있는 듯하다. 언론중재법에 포털이 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포함이 되고, 포털 관련 정정보도청구는 물론, 손해배상과 기사의 삭제 또는 게시중지청구까지 중재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본다.